어촌 · 어항개발 표준품셈

2022. 0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장 총칙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2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2
1-6	세부시행기준	2
제 2	장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	4

▶ 제1장 총 칙

- 1-1 목적
- 1-2 적용범위
- 1-3 용어의 정의
-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 1-6 세부시행기준

제 1 장 총 칙

1-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 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①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

1-3 용어의 정의

-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 "직접인건비" 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 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3) "투입인원수" 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 4) "기본업무" 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 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 5) "기준인원수" 란 기본업무별 1단위(면적, 길이, 개소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 6) "환산계수" 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 수량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설계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설계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 7) "보정계수" 란 환산계수와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어촌·어항개발 제1장 총칙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 1) 투입인원수는 각 기준인원수,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한다.
 - \cdot 투입인원수(인 \cdot 일) = Σ (기준인원수 \times 화산계수 \times 보정계수)
- 2)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다.
- 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에 따른다.
- 4) 각 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5) 제시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6 세부시행기준

- 1) 이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수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하여야한다.

부 칙

2022년에 공표된 어촌어항개발 표준품셈은 20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장 어항개발 및 정비 계획 수립

제 2 장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

가. 정의

「어촌・어항법」제4조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개발계획 수립 중「어촌・어항법」제19조의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해당되며,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이란 어항의 개발을 촉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말한다.

나. 추진절차

기초자료조사
Ţ.
어항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Ţ.
어항 개발방향 설정
Ţ.
어항 개발여건 전망 및 시설수요 추정
Ţ.
평면배치계획
Û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
Û
관계기관 협의 및 반영
Û
성과품 작성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업무	업무 정의					
	과업착수 준비	과업착수 준비 및 착수 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					
	자연조건 조사	지형 및 지세(위치, 지형 및 지질, 지진현황 등), 기상자료, 해상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					
	입지여건 조사	주요 경제지표조사(인문·사회현황, 산업 및 경제현황), 토지이용현황, 수산자원현황, 배후 및 연계수송망 현황, 동력 및 용수현황, 상하수도 현황, 관광자원현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					
	현지조사 및 답사	개략적인 재료원, 작업장, 적출장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					
자료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국가관련계획 및 부문별, 지역별 주요 개발계획, 어촌·어항개발계획, 수산업발전계획 등을 조사 및 분석하는 업무를 의미					
	어항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어항시설 현황조사, 이용현황,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					
	어업권 조사	어항의 어업권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					
	지형 및 수심측량 성과검토	지형 및 수심측량 조사결과에 대한 성과검토 업무를 의미					
	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검토	지반조사 및 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업무를 의미					
	용지, 보상물,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어항 주변 용지, 보상물,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					
	어항 개발 방향 설정	대상 어항의 행정구역, 행정구역내 어항현황, 재적어선 및 타 어항 이용어선, 외래어선 등을 파악하여 어항개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를 의미					
	어항 세력권 설정 및 어선척수 추정	기존 어업 활동의 세력권을 설정하여 검토, 어선 척수를 추정하는 업무를 의미					
	어항 개발여건 전망 및 시설수요 추정	어항개발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획량 추정/전망, 관광여객 및 기타 수요를 추정하는 업무를 의미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어항 평면배치계획 수립	어항의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역시설 및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의미					
성비세 력	시설계획 검토	설계기준 설정, 기본단면 결정,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무를 의미					
	연도별 투자계획	평면배치계획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					
	인허가 검토 및 협의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 지원, 검토 및 협의를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최소화 방안을 검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기타 개발 사항을 협의하는 업무를 의미					
성과품 작성	기본계획보고서(별책부록, 도면 포함)	기본계획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기본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환산	보정계수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계수	(7)	9	9
	과업착수 준비	식	4.56	6.44	5.09	3.22	2.15		•		
	자연조건 조사	식	1.13	3.18	3.63	4.08	6.13		•		
	입지여건 조사	식	1.59	3.40	3.63	4.08	5.45		•		
	현지조사 및 답사	식	3.16	7.71	5.96	5.61	5.61		•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식	4.56	9.12	7.36	4.21	2.81		•		•
자료조사	어항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식	1.86	4.64	6.81	5.26	6.19		•		•
7,3237,	어업권 조사	식	1.07	3.49	5.90	5.36	5.63		•		•
	지형 및 수심측량 성과검토	식	2.17	6.50	5.57	5.26	5.26		•		•
	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검토	식	3.16	8.06	7.01	5.61	4.21		•		•
	용지, 보상물,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식	1.13	4.31	3.40	4.08	5.22		•		•
	어항 개발 방향 설정	식	11.86	10.91	8.54	4.74	1.90		•		•
	어항 세력권 설정 및 어선척수 추정	250,000 m²	2.85	9.49	9.96	8.54	7.12	1)	•		•
.151.900	어항 개발여건 전망 및 시설수요 추정	250,000 m²	7.59	9.49	8.06	7.59	5.22	1)	•		•
어항개발 및	어항 평면배치계획 수립	250,000 m ²	19.68	21.86	20.77	16.40	8.75	1	•	•	•
정비계획	시설계획 검토	250,000 m ²	13.14	21.22	19.20	17.18	10.11	1	•	•	•
	연도별 투자계획	식	1.49	10.40	9.41	9.90	8.42		•		
	인허가 검토 및 협의	식	7.92	3.96	3.96	1.98	1.98		•		•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	ই	2.67	3.10	2.53	2.24	1.01		•		•
성과품 작성	기본계획보고서 (별책부록, 도면 포함)	식	13.28	16.13	17.08	17.08	12.33		•		•

주 1) 상기 품셈은 1개 어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계수	① 면적	• (A 250,000) ^{0.2} ※ A = 대상사업 면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⑦ 항의 종류	• 국가어항 : 1.00 • 지방어항 : 0.80 • 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 : 0.60	
보정계수	와 지역	• 동해, 서해 : 1.10 • 남해 : 1.00	
	⑤ 기존계획 성격	• 기본사업(신규) : 1.00 • 정비사업 : 0.80	